2) 주거생활 환경개선

■ 주거생활 환경개선			
1. 정의	전체 행정구역 중 도시정비사업 면적비율		
2. 측정단위	백분율(%)		
3. 지표선정의 필요성			
- 목적	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지표이다.		
- 고려 요소	▶ 고려 요소 범위	▶ 핵심요소	
	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	- 기존 녹지축과의 연계 - 기존 수체계의 보전 - 주변 지역과의 경관성 고려(경관계획) - 생물(동, 식물 등) 서식지의 보전	

3) 도시의 확장

■ 도시의 확장		
 1. 정의	개발제한구역(Greenbelt)중 해제 면적비율	
2. 측정단위	백분율(%)	
3. 지표선정의 필요성		
- 목적	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표이다.	
- 고려 요소	▶ 고려 요소 범위	
	-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 -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,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-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-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회(市街化)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-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- 도로(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)·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(開水路)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(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 -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(垈地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각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)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-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	
	▶ 핵심 요소	
	 해제 위치의 적성성 해제 면적의 적성성 광역도시계획과의 연계 도시의 확장성 고려 주변 지자체와의 연계 풍수지리와의 지맥의 연결성 	